

제41조(최종 논문제출)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논문은 논문심사 완료 후 공고 기간 내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정책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최종 논문 하드본 3부(실제 날인이 있는 하드본 1부 포함) 및
2. 학위논문 등록 확인서 1부
3. 저작물 이용 허락서 1부

제42조 삭제 <2015. 07. 30.>

제 9 장 휴학, 복학, 전공변경, 퇴학 및 제적 <개정 2013.05.24.>

제43조(휴학 및 복학)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.

② 휴학을 원하는 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, 군입대 휴학 또는 질병휴학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(입영통지서, 종합병원장 또는 이 대학 보건진료소장이 발행하는 4주 이상의 진단서)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1회 휴학기간은 2학기(1년)로 하며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입대와 공무상 해외출장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한다.

④ 휴학기간이 경과한 자는 학기 초 등록기간 중 복학하여야 한다.

제44조(퇴학 및 제적) ①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장에게 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된다.

1. 소정 등록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
2.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자
3. 재학연한내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
4.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결석한 자
5. 타 대학원에 입학한 자
6. 질병 기타 사유로 학업수행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

제45조(전공의변경) ① 학생은 제1학년 제1학기 수료 후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.

② 학생이 전공변경 전 취득학 학점 중 변경된 전공의 교과목과 일치한 과목의 학점은 변경된 전공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.

제 10 장 장학금 및 연구비 보조

제46조(장학금과 연구비) 이 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.